



I. 예산편성 및 집행

재해복구사업 예산집행 요령

- ▶ 복구계획 확정·통보직후 성립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(前) 집행, 긴급입찰제도 활용 등을 통해 계약기간 단축
- ▶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일반회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
- ▶ 각 중앙관서 및 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 등 재해복구사업 예산이 배정되면 이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지체 없이 교부
- ▶ 예비비 예산 중 재해대책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여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.
※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2018.12.31.)
- ▶ 경쟁 입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이라도 경쟁 입찰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
- ▶ 경쟁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,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로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
※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(행정안전부 예규)

1 • 예산편성

▣ 일반회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

-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승인 절차 이행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반복적인 재해로 예비비가 부족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
-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일반회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
- 예산편성 규모
 - 시·군·구별로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실적을 근거로 자율 편성

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사례 (○○구)

세출예산서			
[000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]		(단위 : 천원)	
부서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재난관리과	7,570,082	7,026,548	543,534
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	5,459,598	5,298,202	161,396
재해예방 및 재해복구	172,398	214,561	△42,163
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 구축	30,300	40,314	△10,014
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	19,800	22,501	△ 2,701
02 민간인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지원	10,000		

○ 기대효과

-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단축, 피해주민의 조기 자활 및 생업 복귀 유도

* 지급시기 : 현재 20일 정도 소요(예비비 승인 절차 이행 등) → 10일 이내

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비교

구분	'16. 8월 호우 · 강풍 · 풍랑	'09. 12월 강풍 · 풍랑	'08. 7월 호우	'05. 8월 호우	비고
총소요기간	7일	18일	23일	63일	
피해발생	8.26~9.1	12.4~6	7.23~26	8.2~3	
지급완료	9.8	12.24	8.18	10.5	

▣ 예산총칙의 예산이용 사전 승인대상에 복구비 추가

- 복구예산중 재난지원금 선지원금 및 공공시설 지방비 부담분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자체예비비를 활용하고 있으나,
- 대규모 피해로 예비비가 부족하여 기정예산을 이용하는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산이용 사전 승인 대상에 복구비 추가

○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)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
○ 기대효과

- 예산총칙의 「예산 이용」 사전승인 대상에 재해복구비를 포함, 복구비 부족시 他 비목에서의 충당이 용이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

「예산총칙」에 복구비 「예산이용」 반영 사례 (○○구)

- ▶ 서울 00구 00년 본예산 「예산총칙」 제7조(예산의 이용)
 -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.
 1. ~ 4. (생략)
 5. 재해대책 및 복구비